

경력개발센터 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경력개발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 2. 9., 2015. 3. 1.>

제2조 (명칭) 명칭은 서울신학대학교 경력개발센터(이하 “본 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<개정 2012. 2. 9., 2015. 3. 1.>

제3조 (위치) 본 센터는 본대학 내에 둔다

제4조 (기능) ① 취업·창업 및 경력개발에 대한 인식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② 취업통계 및 졸업자의 사회진출현황에 관한 사항

③ 취업 및 경력개발 상담 및 교육지원과 취업·경력개발 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

④ 진로정보 및 진로상담 관련 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

⑤ 취업·창업 동아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

⑥ 취업·진로·창업 관련 수업 진행에 관한 사항

⑦ 기타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15. 3. 1.]

제2장 조 직

제5조 (소장) 본 센터에 소장을 둔다.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9.>

제6조 (직원) 본 센터에는 사무직원 및 근로장학생을 둘 수 있으며 자격 및 직무 등은 본 대학 관련규정 및 본 센터 내규에 의한다.

제7조 (학생진로 및 취업지도위원회 구성) 본 센터의 운영 및 학생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진로 및 취업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2. 2. 9., 2015. 3. 1.>

제8조 (위원회 기능) ① 취업, 창업 경력개발에 관한 기본 사항 <개정 2015. 3. 1.>

② 본 센터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
③ 취업 추천 및 부직 알선에 관한 사항

④ 기타 진로 및 취업지도에 관한 정책의 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 3. 1.>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취업지도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재가에 의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